대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32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 : 허 영 • 박지원 • 박해철

서영교 • 박상혁 • 권칠승

박성준 · 임호선 · 소병훈

한정애 · 안도걸 · 이연희

홍기원 · 김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마련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1990년 이후 2022년까지 의 주변지역 피해 추정액(최대 10조원)의 약 2% 수준인 1,120억원이지원된 데 불과하여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댐사용권자는 댐 건설 시 부담한 건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댐 저수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다목적댐의 경우 이미 건설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어, 그 초과수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확원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완료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와 사업의 내용, 제2항·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 수립 시

- 기 ·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댐주변지역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특 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 · 운영한다.
- 제43조의3(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댐관리청 또는 생활용수댐 · 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 2.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제43조의4에 따른 차입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 의 출연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 1.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제2호에서 정하는 댐사용권자를 제외한다),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

- 가.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 나.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 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 2.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댐사용권자: 전전년도의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서 전전년도의 제36조에 따른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 제43조의4(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43조의5(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댐주 변지역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단"이라 한다)에 댐주변지역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에 댐주변지역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의6(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댐의 운영·관리 또는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산정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서류·시설·장비 등에 대한 출입 ·검사의 시기·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재원과 그에 따른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 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러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 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완료된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댐 주변지 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종 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수 있다. 하는 자가 시행한다.
- 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 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 정한다.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지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 역의 범위와 사업의 내용, 제2 항 ·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 제43조의2(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 계의 설치 · 운영) ① 댐주변지 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댐주변 지역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 • 운영한다.
- 제43조의3(특별회계의 세입·세 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댐관리청 또는 생활용수댐 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 2.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 4. 제43조의4에 따른 차입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
 원사업
-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
- ③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같은항 제2호의 출연금을 출연하여야한다.
- 1.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제2호에서 정하는 댐사용권자를 제외한다),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가.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이내

<신 설>

<신 설>

- 나.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 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 액의 100분의 22 이내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사용 권자: 전전년도의 제35조제1 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서 전전년도의 제36조에 따른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 제43조의4(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 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 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 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3조의5(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 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 <신 설>

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이라한다)에 댐주변지역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에 댐주 변지역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 게 하려면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의6(보고·검사) ① 환경부 장관은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 도사업자에 대하여 댐의 운영 ·관리 또는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산정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 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 런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 출, 서류·시설·장비 등에 대 한 출입·검사의 시기·절차·

-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 2. 생활용수대·공업용수대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 3. 차입금
-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 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

 <u>내</u>
- 2. 전전년도 생활용수 · 공업용

<u>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 <u>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 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 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 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 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 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 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 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